

— 구미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관련법에 맞게 재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3. 주요내용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본에 의한 열람·복사만 가능하던 것을 전산자료에 의한 열람·복사가 가능토록 개정(제3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용어정리(제7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청, 신고, 변경 신고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조례에 규정(별표1중)

4. 참고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동규칙 제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

5. 검토의견

- 구미시제중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를 추가하거나 용어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맞게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임.
- 제3조제2항 중 “열람 및 복사에”를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시청·복사·복제물에”로 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7조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제5조제1항의”로 “생활보호대상자가”를 “수급자로서”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내용과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 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규정토록 규정함에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타조례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